

청탁금지법 상담관리 (2021년)

번호	일자	상담내용	비고
1	2021. 5.12.	<p>문) 공직유관단체가 요청에 따라 비대면 서면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?</p> <p>답)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, 외부강의 등으로 신고하여 수수 사례금의 대가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.</p>	청탁금지법 제10조
2	2021. 9. 7.	<p>문) 명절 사교,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, 선물 등의 범위는?</p> <p>답) 음식물 3만원, 경조사비 5만원, 화환 등은 10만원,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등 포함 5만원, 농수산물공물은 10만원 범위 이내로, 위 항목의 2개 이상 합산금액이 각각의 정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. 상세내역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[별표1]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 참고</p>	청탁금지법 제8조령 제17조
3	2021. 9.16.	<p>문) 수수금지 금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였을 경우 조치방법은?</p> <p>답) 수수금지 금품을 반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증빙자료를 포함해 지체 없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. 금품 반환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,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의 청구 가능.</p>	청탁금지법 제9조